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4-09-10

서 울 고 등 법 원

제17-1민사부

판 결

사 건	2023나2053752 손해배상(기)
원고, 항소인	A
	소송대리인 변호사 윤◯(소송구조)
피고, 피항소인	1. ◯◯광역시
	소송대리인 변호사 이◯◯
	2. ◯◯광역시 ◯구
	소송대리인 법무법인 ◯◯ 담당변호사 오◯◯, 장◯◯, 김◯◯
제1심 판결	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10. 31. 선고 2022가단5132066 판결
변 론 종 결	2024. 5. 2.
판 결 선 고	2024. 5. 30.

주 문

1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4-09-10

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.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75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. 7. 1.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(원고는 이 법원에서 추징금 23,426,760원 청구 부분에 관한 소 및 항소를 취하하였다).[1)]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.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,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(다만 제1심판결의 이유 중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부분 및 피고들에 대한 추징금 청구 부분은 제외).

○ 제1심판결 제7면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.

『원고는, 원고가 당시 중구청 2청사 1층 화장실에서 자살을 시도하고 의식을 잃었는데, 2022. 3. 1. 12:30경 자신의 차량에서 의식을 되찾았는바, 피고 ○○광역시 ○구 소속 공무원이 화장실에서 자살을 시도한 원고를 발견하고 원고 차량으로 옮기면서 구호

1) 원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가, 제1심 소송 계속 중 대한민국을 주위적 피고로 하고, 피고들을 예비적 피고로 추가하였다. 제1심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자,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가 이 법원 계속 중 대한민국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다. 원고는 대한민국을 주위적 피고로, 피고들을 예비적 피고로 기재하여 예비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구하였으나,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상호간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본래 의미의 예비적 공동소송으로 볼 수 없고,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보아야 하는바, 원고가 이 법원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대한민국에 대한 제1심판결은 분리·확정되었다(대법원 2012. 9. 27. 선고 2011다76747 판결 참조).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4-09-10

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,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.』

2. 결론

제1심판결은 정당하다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한○○

판사 차○○

판사 오○○